

## 공 시 송 달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 【독촉과 최고】에 의거 독촉장을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【공시송달】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9 년 11 월 5일

왜 관 읍



1. 제 목 : 2019년 8월 수시분 독촉장 공시송달
2. 근거법류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
3. 공고기간 : 2019. 11. 5. ~ 2019. 11. 20.
4. 간주납기 : 2019. 11. 30.
5. 공고대상자 : 불임참조
6.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: 왜관읍 재무담당(054-979-5236)